##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손명수의원·윤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438

발의연월일: 2025. 5. 9.

발 의 자: 손명수 · 윤영석 · 김태년

김한규 · 맹성규 · 김원이

김남근 • 박용갑 • 서삼석

박홍배 • 윤종군 • 남인순

이학영 • 권칠승 • 김영배

전용기 · 장경태 · 송기헌

민형배 • 이연희 • 염태영

정태호 · 이정문 · 박덕흠

백종헌 · 김태호 · 구자근

문금주 • 박대출 • 이헌승

이인선 · 김도읍 · 정동만

조경태 · 서일준 · 황운하

곽규택 • 서지영 • 안태준

엄태영 • 박성민 • 서천호

최형두 • 박성훈 • 최은석

이상회 · 서범수 · 김종양

이종욱 · 김기표 · 신성범

권영진 · 김상훈 · 문진석

이건태 • 유종오 의원

(5691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·발전과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재정·금융·세제·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고속철도 차량의 절반 이상은 20년 이상 된 노후 철도차량으로, 이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, 철도이용자 의 안전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그런데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여건상 철도운영자가 충분한 이익잉여 금을 적립하기 어려워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철도차량의 교체를 적 기에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, 노후 철도차량 교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·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임.

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는 철도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철도운영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철도산업의 지원) (생 략)	제8조(철도산업의 지원) ① (현행
	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국가는 철도이용자의 안전
	을 위하여 철도운영자가 국토
	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
	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필
	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
	<u>할 수 있다.</u>